

##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명)	선발구분(명)			필기시험과목 (1차·2차 통합 실시)	비고
				일반	장애인	재능층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교육행정)	106	94	10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전산	1	1	0	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2	2	0	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시설(건축)	3	3	0	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2	2	0	0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소 계			114	102	10	2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	1	1	0	0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특성고(일반고형 화학)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공업(일반전기)	2	2	0	0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건축)	2	2	0	0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운전(운전)	15	15	0	0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소 계			20	20	0	0	
합 계			134	122	10	2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1년부터 기록연구 직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됩니다.

###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객관식4지 택형·100점 만점】

■ 필기시험 과목 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수	5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60분 (10:00~11:00)	40분 (10:00~10:40)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1)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단,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직렬)에 한하여, 2021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면허)증·경력 등 제한

1) 아래 직렬(직류)의 응시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학력·자격(면허)
공개경쟁	9급	사서	사서	▶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9급	전산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li> <li>-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한 사람</li> </ul>
경력경쟁	9급	공업	일반 기계	▶ <b>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b>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	일반 전기	▶ <b>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b>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	건축	▶ <b>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b> 건축(건축설비)
		운전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 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공업, 시설직렬은 강원도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1」 2021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직렬: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운전면허(대형)]이 유효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①-1 또는 ①-2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①-1, ①-2의 합산경력도 인정), 그리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거 **승합대형 운전경력**

※ 승합대형의 규격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경우를 말함

①-2.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유형별 세부기준의 **승용,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군대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며, 공공기관, 공공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및 사립 학교 등은 포함하지 않음.

※ ①-2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과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형태는 인정하지 않음.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필기시험 합격 후 필수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 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것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제1종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 ③ 경력 증명서 1부: [서식 1] 활용
  - ※ 경력은 운전을 주업무로 하며, 주 5일근무, 1일 8시간이상 상시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말하는 것임.[상시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을 계산함**]
- ④ 군 운전경력 확인서 1부: [서식 2] 활용[※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⑤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1부
- ⑥ 운전경력 증명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3년간 없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경찰민원

포털(<https://minwon.police.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필수서류이며, 제출기간은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합니다.
- ※ 위의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비상시 근로 등)에는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 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거주지 제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공개경력임용시험 중 기록연구 직렬과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공업, 시설직렬 응시자는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경우
  -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경우
-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교육행정 10명】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교육행정 2명】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혹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그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공동출제위원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대상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p>※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중</p> <p>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p>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공동출제위원회 (17개시·도교육청)	<p>※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중</p> <p>국어(한문포함-기록연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기록연구)</p> <p>※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p> <p>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p>	비공개	회수

-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까지 【취소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6.(월) 18:00 까지】	제1·2차 필기시험	2021. 5. 24(월)	2021. 6. 5(토)	2021. 7. 5(월)
	제3차 면접시험	2021. 7. 5(월)	2021. 7. 23(금)	2021. 8. 2(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 공고 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개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 (<http://edurecruit.kwe.go.kr>)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하나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나. 취소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6.(월) 18:00까지 【취소기간 내 24시간 가능  
하나 취소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접수방법

1)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 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 지방공무원 채용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장애(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 및 접수 마지막 날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9급	5,000원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본인) 결제 ※ 결제 납부를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니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
연구사	7,000원	※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하나, 취소 기간 후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첨부 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24223)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격 및 용량 : 가로 3.5cm×세로 4.5cm(140×180pixel), 9Kbyte이상 100Kbyte미만

- 확장자명 : jpg형식 파일만 가능

- 기타 : 해상도 100dpi,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반명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시험 당일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사진 파일 이름에 특수문자를 쓸 경우 등록 불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3)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4)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5)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6)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7)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마. 응시표 출력
- 1)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되므로 반드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2021. 5. 24.(월) 10:00부터 2021. 6. 5.(토) 10:00까지** 출력가능하며,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등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가산점 합산 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혹은 의사상자】 + 【직렬별 가산점 1개】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산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산점 반영**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직렬(직류)별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0], [별표11]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변호사	5%
시설(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5%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3%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이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증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4) 위의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가산특전), “다” (자격증소지자 가산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위의 “나” 항과 “다” 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6)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되며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장애인·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나.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0.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

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필기시험 시행 당일 공동출제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 전자담배 등의 전자장비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아. 시험시간 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에는 소음방지용 귀마개,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

립니다.

-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타.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출이 제한됩니다.
- 파.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http://edurecruit.kwe.go.kr>)에 공고합니다.

[첨부]

- 1. [서식 1]: 운전경력증명서
- 2. [서식 2]: 군 운전경력 확인서
- 3. [서식 3]: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
- 4. 2021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5.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 6.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서식 2]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6. 11. 29.>

<p>사 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p>	<p>군 운전경력확인서</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번호 : 제 호</p>			
①용 도	<input type="checkbox"/> 경력증명용, <input type="checkbox"/> 일반면허 갱신용, <input type="checkbox"/> 보험처리용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소 속			⑥계 급	
			⑦군 번	
⑧입대연월일	⑨제대연월일		⑩주특기	
<p>군 운전 면 허</p>	운전교육기관		입교연월일	
	발급기관		졸업연월일	
	군면허종별		발급번호	
<p>운 전 경 력</p>	운전차종 (탑승인원/적재중량)	주행기록	실 운전기간	주행거리
<p>일반면허 교부대상</p>	<input type="checkbox"/> 1종대형, <input type="checkbox"/> 1종보통, <input type="checkbox"/> 1종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견인차 <input type="checkbox"/> 소형견인차, <input type="checkbox"/> 구난차, <input type="checkbox"/> 2종보통, <input type="checkbox"/> 2종소형, <input type="checkbox"/> 원동기장치자전거			
<p>확 인</p>	위 운전경력 기록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송관 소속	계급	성명	인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소속	계급	성명	인
	국방부장관			관인
※ 운전경력 확인에 있어 제1차 확인은 소속 수송관이, 제2차 확인은 대령급 이상 소속부대의 장이 실시한 후,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첨부 4.

## 2021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1.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 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3항
- 라.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시험 구분	직군 (직급)	직렬(직류)			총인원
		공업 (일반기계)	공업 (일반전기)	시설 (건축)	
경력경쟁임용 시험	기술 (9급)	1명	2명	2명	5명

### 3. 선발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직렬(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내용
공업(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input type="checkbox"/> 과목당 100점 만점 <input type="checkbox"/>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input type="checkbox"/> 객관식 4지 택1형 <input type="checkbox"/> 시험시간 60분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비 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 합니다.
공업(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1) 합격자 결정 :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의 10. 합격자 결정 참조
  - 2)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
- 나. 2021년 고졸(예정자) 특성화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시험 과 목(출제범위) (1·2 차 병합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공 업 (일반전기)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건축)	제1차 필수(1) : 물리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4. 응시자격

- 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 마이스터고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이나, 2021학년도 고교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 5.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선발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복지원 금지: 1인 1직렬만 지원 가능)

가. 임용예정직렬(직류)의 해당 학과 졸업(예정)자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기준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공업(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건축)	건축(건축설비)

※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아래 판단 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하므로 학교장 추천 시 해당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 2) 직무분야별 관련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2-49호)’ 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함

나. 위 해당학과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 강원도교육감이 인정한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 2)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3)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 성적 합산 범위

구분 1	구분 2	성적합산기준
졸업자	2021년 이전 졸업	고등학교 전 학년
	2021년 2월 졸업	
졸업예정자	2021년 고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고에서 실업계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구(舊)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

-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제외하며,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21. 1. 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 졸업자의 경우, 학교 추천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졸업한 학교에 사전 문의

## 6. 추천방법 및 인원

가. 추천방법 : 해당 학교는 자체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졸업(예정)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천자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자격요건 등에 따라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추천하여야 합니다.

나. 추천 인원 : 제한 없음

다.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름

## 7. 추천서류 사전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3. 29.(월) 09:00 ~ 2021. 4. 2.(금) 18:00**

나.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일괄 제출(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처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24223)

※ 봉투 겉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방공무원 채용서류 재증” 표기

라. 제출서류

- 1) 학교장 추천 현황표 1부 <붙임 서식 참조>
- 2) 학교장 추천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 3) 졸업(예정)증명서 1부
- 4)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전학년 석차비율 또는 석차등급 기재) 1부
- 5) 도단위 이상 입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6) 관련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 7) 서약서(응시자 본인 작성) <붙임 서식 참조>

마. 문의처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3-258-5237)

## 8. 응시원서 접수

가. 대상자 : 학교장 추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 본인이 인터넷 접수

나.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

다. 접수방법 :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의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참조

※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서접수

## 9. 기타 유의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나.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추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식1] 강원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부.

[서식2]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참조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부.

[참조2]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직무분야별 학과 1부. 끝.

[서식 1]

## 강원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 1. 학교명:

(담당자: \_\_\_\_\_, 학교 연락처: \_\_\_\_\_, 핸드폰번호: \_\_\_\_\_)

### 2. 추천대상자 현황 (1명당 1개직류 택, 중복지원 불가)

○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졸업일	대회명	수상 내역	수상일
1	홍길동 (2002.11.11.)	남	공업 (일반전기)	전기과	2021.2.20.		금상	

○ 성적우수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성적					졸업 (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성취평가제 적용			졸업 (예정)일		
						평균석차 비율	전문교과	보통교과			
						성취도평균 B등급이상 이수여부	성취도 A등급비율	석차	석차 비율	석차 등급	
1	홍길동 (200*.**.**) )	남	공업 (일반전기)	전기과		O/X (총10과목)	70% (7/10)	1/50	1%	1	2021.2.20.
2		여	시설 (건축)	건축	5%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

보통교과 : 평균석차비율이 50%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자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3. 직렬(직류)별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공 업	일반기계		
공 업	일반전기		
시 설	건 축		
계			

[서식 2]

## 학 교 장 추 천 서

추천 직렬(직류)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3cm×4cm)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출신학교					
	소재지					
	학 과	학과				
	졸업 여부	(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전문 교과	성취도 평균B이상	해당 ( ) 미해당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 여부		O, X (해당부분에 동그라미)				
대회명 및 입상성적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p>위 사람은 ○○고등학교 ( )학과 졸업(예정)자로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1. 3. 2.) 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능인재 추천임용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학교장 (직인)</p>						
<b>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b>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1부</li> <li>2.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li> <li>3. 관련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li> <li>4. 입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li> </ol>						
■ 담당자 : 직		성명	연락처			

[서식 3]

## 서 약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참조]

**국가기술훈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훈자격의 종목 (제3조 관련)**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0)					서비스 분야(32)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8	116	121	161	10	10	3	9	
14 건설 (6/99)	141 건축 (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 (47)	농어업 토목									
		토목 구조		토목	토목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차량				자동차차체수리						
				그린전동자동차								
17 재료(5/38)	172 판금·제판·새시(5)		판금제관		판금제관	금속제창호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174 용접(6)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20 전기·전자 (2/40)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4)			광학		광학						
						광학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참조2]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직무분야별 학과(발체)

직무분야	종 직무분야	관련 학과
14 건설	141 건축	<p>가구디자인(과,전공,학과), 가구조형(과·전공), 가정관리학과, 가정주거학과, 가족주거학전공, 건물관리과, 건설·건축계열, 건설·응용화학공학계열, 건설·환경·화학공학과군, 건설계열, 건설계열건설전공, 건설계열학과군,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설공학(과,과군,학부,전공,계열), 건설공학교육(과·전공), 건설관리계열, 건설관리시스템전공, 건설교통공학(계열,과,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정보과, 건설기계전공, 건설농업기계전공, 건설도시공학(과,부,학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건설디자인계열, 건설리모델링과,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계전공, 건설시공감리전공, 건설시공전공, 건설시스템(과,공학과,공학부,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설재료공학과, 건설전공,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건설컨설팅전공, 건설토목과, 건설토목환경공학과, 건설학과, 건설환경(계열,공학과,공학군,공학부,전공,과), 건설환경건설공학부,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환경설계전공,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공학전공,과,학과), 건설환경정보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건축·토목설계학부, 건축계열, 건축계획전공, 건축공간디자인계열, 건축공학(과·부·전공), 건축공학계열, 건축공학교육과,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 건축공학·빌딩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설비공학부, 건축과, 건축기계설비공학(과·전공),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건축디자인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디자인·CAD전공, 건축리모델링(과,전공),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과,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건축물관리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과,부),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산업학(과·전공), 건축생활디자인계열, 건축설계/CAD전공, 건축설계공학(과·전공), 건축설계기술전공, 건축설비(공학과,공학전공,과), 건축설비·기계공학부, 건축설비디자인과, 건축설비설계학(과·전공),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건축설비자동화과, 건축설비학(과,전공), 건축설비환경과, 건축소방설비(학)(과·부·전공),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행정학(과·전공), 건축시공(과,전공), 건축시스템공학(과·전공·부·계열), 건축시스템공학부, 건축시스템관리과, 건축실내건축학부, 건축실내디자인(과,전공,학부),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군,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건축·실내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 건축·환경디자인학부, 건축환경환경학부, 건축엔지니어링전공, 건축인테리어(계열,과,전공,학부),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과, 건축장식과, 건축전기설비과, 건축전기시스템과,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조경학부, 건축조형계열, 건축조형예술계열, 건축컴퓨터공학과군, 건축토목(계열,공학과군,학부,과), 건축토목도시공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과군,학부),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학(과·부·전공), 건축화학재료공학계열, 건축환경(과,학과,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학과·계열), 건축환경생명공학부, 건축환경설계과, 건축환경설비(과,학과), 건축환경시스템(과,학부), 건축환경토목공학과군, 건축환경화학공학과군, 공간관리계열, 공간디자인(학부,전공,학과), 공간리모델링과, 공간사회환경공학부, 공간시스템공학부, 공간연출과, 공간연출디자인(과,전공), 공간예술과, 공간조형디자인전공, 공간조형학부, 공간진단학부, 공간환경(전공,학부),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공간환경시스템</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공학부,전공), 공연·영상무대디자인(과전·전공), 그린에너지설비(과·전공), 그린인테리어과,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기계공학건축학과군, 도시건축공학부,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전공, 디지털디자인·건축학과, 디지털인테리어과, 리모델링(과, 건축과, 인테리어계열), 목조건축인테리어(과·전공), 빌딩설비디자인과, 빌딩설비시스템(과,전공,코스), 산업건축학과, 산업토목(과,학과), 생활경영학과, 생활과학(과·전공·부),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과학산업학(과·전공), 생활디자인(학)(과·전공), 생활복지주거학과, 생활주거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설비(계열·과·전공), 설비디자인(과·전공), 소방건설계열,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소비자주거학과, 시각디자인·실내디자인·애니메이션전공, 실내건축(학)(과,전공), 실내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과,학과,전공,계열),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실내디자인(학)(과·전공·부), 실내디자인공학과, 실내리모델링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과, 실내인테리어리모델링과, 실내장식과, 실내장식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학)(과,전공), 실용건축과, 아동주거학전공, 웰빙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설계열, 인테리어·건축계열,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인테리어·리모델링전공, 인테리어건축(과,전공), 인테리어건축토목(과,계열), 인테리어건축학전공, 인테리어리모델링(과,전공), 인테리어산업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인테리어코디네이션(과,부,전공), 인테리어패션디자인((학)과, 전공),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재료환경건축공학(과,과군), 전산응용건축전공, 전통건축학(과,부,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조명인테리어(학)(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및실내계획전공, 주거실내디자인학과, 주거·가족복지(과·전공), 주거·가족아동학(과·전공), 주거인테리어디자인학과, 주거학(과·전공), 주거환경(학과,전공), 주거환경디자인전공, 주거환경소비자과, 주생활학(과·전공), 주택(전공,과), 지역건설공학(과,전공), 지역기반공학과(전공), 축조경토목공학부, 친환경건축문화학(과·전공), 컴퓨터건축설계과, 컴퓨터응용건축과,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전공), 테마파크디자인과, 토목·건축·도시정보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부, 토목건설과, 토목건설시스템과, 토목건축공학(과,부), 토목건축측지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과군, 토목환경건축공학(과,과군), 토탈인테리어전공, 패션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학과군, 패션디자인주거환경디자인학과군, 한옥문화산업(과·학과·전공), 해양건축공학과, 해양공간건축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건설정보학과 건설·건축계열, 건설·응용화학공학계열, 건설·환경·화학공학과군, 건설계열, 건설계열건설전공, 건설계열학과군,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설공학(과,과군,학부,전공,계열), 건설공학교육(과·전공), 건설관리계열, 건설관리시스템전공, 건설교통공학(계열,과,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정보과, 건설구조공학(과·전공), 건설기계전공, 건설농업기계전공, 건설도시공학(과,부,학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건설디자인계열, 건설리모델링과,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계전공, 건설시공감리전공, 건설시공전공, 건설시스템(과,공학과,공학부,전공),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설재료공학과, 건설전공,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부서관(과·전공),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건설건설팅전공, 건설토목과, 건설토목환경공학과, 건설학과, 건설행정(과·전공), 건설환경(계열,공학과,공학군,공학부,전공,과), 건설환경건설공학부,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환경관리(과,전공), 건설환경디자인학(과,전공), 건설환경설계전공,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공학전공,과,학과), 건설환경정보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건축·토목설계학부, 건축도시토목공학계열,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군, 건축·토목공학</p>
	142 토목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교육학과군,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토목(계열,공학과군,학부,과), 건축토목도시공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과군,학부), 건축환경생명공학부, 건축환경토목공학과군, 공간관리계열, 공간사회환경공학부, 공간시스템공학부, 공간정보공학(과,전공),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전공), 관광레저스포츠계열(경호전공), 관광레저스포츠계열(레저스포츠전공), 관광레저스포츠계열(태권도전공), 구조공학과, 구조및지반전공, 구조시스템공학(과,전공), 국방건설(과·전공), 국제자원개발학과,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기계선박해양공학부, 기계·해양시스템공학부, 기계조선공학(과·전공), 기계해양시스템공학부, 기관(학)과(공학과·공학전공·부·전공·, 기관공학해양생산학과군, 기술직공무원전공, 농업토목(공학,과,전공), 도시개발학과, 도시건설(과,전공), 도시건설디자인계열, 도시건설환경공학과군,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과,부,전공), 도시공학(과,부,전공), 도시과학부, 도시및교통공학(과,전공), 도시및부동산개발학전공, 도시및지역계획과, 도시및지역계획학(과,전공), 도시및지역학부, 도시방재학(과,전공), 도시수도시스템(과·전공), 도시시설관리공학(과·전공), 도시시스템공학과, 도시·교통공학전공, 도시정보지적공학(과,전공), 도시조경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조경학(과,부,과군), 도시지역계획학(과,전공), 도시지역과학부, 도시지역공학(과,전공), 도시토목공학계열, 도시토목환경학(과·전공), 도시학과군, 도시학부,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 도시환경계획학전공, 도시환경공학(과,부), 도시환경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시스템전공, 도시환경조경과, 물리지구해양과학학과군, 물리천문지구환경학부, 복지지적학과, 복지도지정보학부, 부동산지적(과,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부,전공), 산림과학(과,부,전공), 산림조경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전공), 산업·재료·안전공학계열, 산업건설학부, 산업건설환경공학부, 산업공학(과·전공), 산업공학·정밀기계·토목공학과군, 산업시스템·지리정보공학부, 산업잠수학(과·전공), 산업토목(과,학과), 생명자원수산해양학과군,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학(부,전공),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해양학부, 생약자원(개발학과,전공,학과,학전공), 생약자원·농생물학전공군, 생태공학(과,부,전공), 생활자원관리학(과,전공), 선박운항관리전공, 선박운항시스템공학과, 선박전기전자전공, 선박해양공학(과,전공), 선박해양시스템(과,전공), 선박해양정보과, 소방건설계열, 수산공학기관공학과군, 수산공학동력시스템공학과, 수산공학·동력시스템공학과군, 수산자원개발(학)(과·전공), 수산자원생물학전공,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수송기계공학부, 수송기계공학전공(해양수송기계분야), 수송시스템공학부, 수자원·환경해양생산학(과·전공), 수자원및환경전공, 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전공),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부,전공), 신에너지·자원공학(과·전공), 에너지·자원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과,공학과,전공), 역사교육지리교육사회교육학과군, 역사지리사회교육(학)과군, 영양자원학(과,전공), 운항시스템공학부, 위성정보(과)공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응용생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물자원과학(부,과군), 응용지질학과, 인테리어·건설계열, 인테리어·건축계열, 인테리어건축토목(과,계열), 자연자원학부, 자연자율전공학부, 자원·재료금속공학부, 자원경제학과, 자원공과지구환경건설공학부, 자원공학(과,전공), 자원과학부,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부), 자원에너지공학과, 자원육성학전공, 자원환경공학(과,전공), 자원환경과, 조선공학(과,전공), 조선과, 조선무기체계공학(과·전공), 조선및해양공학과, 조선토목계열(과·전공), 조선해양공학(과,부,전공),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과, 지구과학(과,부,군,과군,전공), 지구과학교육(과</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 전공), 지구물리학과, 지구시스템공학(과,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부,전공), 지구시스템·재료금속공학부, 지구정보공학(과,전공), 지구정보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전공), 지구환경(학)전공, 지구환경건설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지구환경과, 지구환경과학(과·부·전공·과군·계열), 지구환경보전(과,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부,전공,과군), 지구환경시스템학(과,부), 지리교육(과·학과·전공), 지리정보공학(과,전공), 지리정보시스템공학전공, 지리정보토목과, 지리정보학전공, 지리학(과,전공), 지반방재공학(과·전공), 지반설계정보공학과, 지역건설공학(과,전공), 지역건설·바이오시스템공학과군, 지역건설환경공학(과,전공), 지역기반건설공학전공, 지역기반공학과(전공),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전공), 지역생태시스템공학(전공),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지역환경기반공학과, 지역환경시스템전공, 지역환경토목전공, 지적(학)(과,전공), 지적공학과, 지적부동산과, 지적정보(학)과, 지적정보공학과, 지적지형정보시스템과, 지적토목과, 지질·지구물리학과군, 지질공학(과,전공), 지질과학과, 지질·지구물리·환경과학과군, 지질학(과,전공), 지질해양학과군, 지질환경과학(과,전공), 지형공간정보(과·전공), 지형정보과, 지형정보시스템과, 철도·토목계열, 철도건설(공학)(과·전공),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철도시설전공, 철도시설토목(과,전공,계열), 철도토목(전공,학과), 철도행정토목((학)과, 전공), 측지공학(과,부), 측지정보(과·전공), 컴퓨터응용토목과, 탐사공학(과,전공), 토목(과·전공·계열), 토목·건축·도시정보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학부, 토목건설과, 토목건설시스템과, 토목건축공학(과,부), 토목건축측지공학과군, 토목건축환경공학과군, 토목공학(과·부·전공·군), 토목공학교육과, 토목도시(과,전공), 토목도시공학부, 토목도시환경공학부, 토목디자인과, 토목및지리정보공학부, 토목산업공학(과·전공), 토목설계(과,전공), 토목설계학(과·전공), 토목시공과, 토목시공관리(과·전공), 토목시스템공학과, 토목신소재산업화학공학과군, 토목·도시디자인학부, 토목안전환경공학(과·전공), 토목정보과, 토목조경(과,학부), 토목조선해양공학과군, 토목지구시스템신소재산업화학공학과군, 토목해양공학부, 토목환경(과·전공·계열), 토목환경건축공학(과,과군), 토목환경공학(과,부,전공,계열,과군), 토목환경도시공학(과,부), 토목환경산업공학부, 토목환경설계전공, 토목환경시스템(과·전공),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부),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토목환경지구정보공학부, 토지관리(과·전공·부·계열), 토지정보(관리)과, 토지행정(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과군, 항공조선공학부, 항공지리정보(과·전공), 항공지형정보시스템과, 항만류시스템전공, 항만물류(학)(과,부), 항만물류시스템전공, 항만물류자동화과, 항법시스템공학(전공,부), 항해학과, 해상경영과학전공, 해상수송과학(과,부), 해상안전환경전공, 해상위험관리전공, 해상정보공학전공, 해상정책관리전공, 해상보험전공, 해상수송과학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해안항만공학전공, 해양개발공학부, 해양건설공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해양계측공학과, 해양공간건축학부, 해양공학(과,부,전공), 해양공학및조선공학과군, 해양과학(과,부,전공), 해양레저장비학과, 해양미생물공학과, 해양및조선공학부, 해양바이오전공, 해양발생공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해양산업공학(부,전공), 해양산업과, 해양산업잠수((학)과,전공), 해양산업정책학부, 해양생명개발학과, 해양생명공학(과,부,전공), 해양생명과학(과,과군,부,전공), 해양생명의학과, 해양생명환경학과, 해양생물공학(과,전공), 해양생물이용학부, 해양생물자원개발과, 해양생물학(과,전공), 해양생산관리학·동력시스템공학과군, 해양생산시스템(과,부,전공,공학과), 해양생산학·기관공학부, 해양생산학기관공학과군, 해양생산학·동력기계시스템공학부, 해양수산자원전공, 해양시스템(학과·부·전공·군·공학과·,</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해양시스템과학전공, 해양시스템보전전공, 해양심층수학과, 해양안전시스템공학전공, 해양에너지자원(과,공학과), 해양응용공학(과,군,부), 해양자원과, 해양자원육성학(과,전공), 해양자원학(과,전공), 해양자원환경과, 해양전자공학전공, 해양전자통신공학부, 해양정보과, 해양정보과학과, 해양정보시스템학전공, 해양토목공학(과,전공), 해양학(과,전공), 해양행정학과, 해양환경(학)(과·전공), 해양환경공학(과,전공), 해양환경과학(과·전공), 해양환경사회기반공학연계전공, 해양환경생명과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건설정보학과, 환경공학및위성정보과학과군, 환경공학및해양시스템학과군, 환경대기및위성정보과학과군, 환경자원관리전공, 환경지질과학(과,전공), 환경지질학과, 환경탐사공학과, 환경토목(과·전공), 환경토목공학(과·전공·부·과군), 환경토목해양토목공학(과·전공), GIS과, U-건설디자인계열, U-건설토목(과·전공)
16 기계	161 기계제작	3D모델링/설계전공, 국방과학기술학(과·전공), 국방기술학부, 기계·정밀기계·기계설계·자동차공학과군,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기계·산업정보공학부, 기계·정밀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건축토목공학부, 기계공학(계열·과·부·전공), 기계공학(과·전공·부·계열), 기계공학건축학과군, 기계공학교육과, 기계공학기계설계학과군, 기계교육과, 기계디자인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전공), 기계및산업공학부, 기계및제어공학과, 기계산업계열, 기계산업공학(계열,부), 기계설계(공학과,공학전공,과,전공,학과), 기계설계시스템정보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기계설계학전공, 기계소재·설계생산공학전공, 기계소재공학(과,부), 기계시스템공학(과·전공),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전공,공학과), 기계식품화학공학부, 기계·정보산업공학부, 기계의용공학(과·전공), 기계재료과, 기계재료식품공학과군, 기계정보경영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부), 기계제조공학(과·전공), 기계컴퓨터공학과군, 기계CAD전공, 기술·가정전공, 나노전자기계공학(과·전공), 동력기계공학과, 동력기계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과, 디지털메카트로닉스(과·전공), 로봇·메카트로닉스전공, 무기·기계공학(과·전공),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박용기계공학(과·전공), 반도체기계공학(과·전공), 산업공학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전공), 산업공학·정밀기계·토목공학과군, 산업공학정밀기계과, 생물산업공학(과,부), 생물산업기계(학)(과·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과,전공), 생산CAD전공, 생산CAM전공, 섬유기계전공, 시계·정보기계설계전공, 시스템디자인전공, 신소재기계공학부, 엔지니어링디자인전공,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과·전공), 의료기계(과·전공), 일반기계설계전공, 자동차플랜트산업(과·전공), 자동화기계설계과, 자동화설계전공, 전산응용가공전공, 전산응용기계설계학과, 전산응용기계학과, 전자·전자계산·기계공학과군, 전자기계공학부, 정밀기계(과·전공), 정밀기계·기계설계·자동차공학과군, 정밀기계공학(과,전공), 정밀기계공학토목공학과군, 정밀기계설계과, 정밀기계시스템과, 정밀기술공학전공, 제품설계전공, 지상무기학(과·전공), 첨단기계(과·전공), 첨단기계설계(과·전공), 치공구설계학과, 캐드그래픽스과, 컴퓨터기계설계(과,전공,부), 컴퓨터응용가공전공, 컴퓨터응용개발과, 컴퓨터응용공학부, 컴퓨터응용과학(과,부,과군), 컴퓨터응용기계(과·부·전공·계열·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디자인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학과,학부,전공,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공학과, 컴퓨터응용설계(과,전공,공학과,학전공,계열),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과·전공), 컴퓨터응용전공, 컴퓨터응용학(부,과군), 컴퓨터정보기계과, 품질경영(과,전공), 하이브리드공학(과·전공), 해양레저장비학(과·전공), 해양시스템(학과·부·전공·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기계공학계열, 화학공학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공학·기계공학계열, 환경/화공·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화공·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화학섬유전기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CAD, 모델링(과·전공), CAD/그래픽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스전공, CAD/제품디자인(과·전공), CAD/CAM전공, CAD·기계설계과, CAD·CAM기계설계과, CAD그래픽스과, CAD디자인전공, CAD응용시스템전공, CAD정보처리전공, CAM엔지니어링(과·전공), e-엔지니어링전공, IT응용전공, MECHANICALDESIGN전공, MSDE(프로그램·전공)
	162 기계장비 설비·설치	가스냉동(과·전공), 건설기계전공, 건설농업기계전공, 건설산업기계전공, 건축기계설비공학(과·전공),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건축물관리학과, 건축설비(공학과,공학전공,과), 건축설비·기계공학부, 건축설비디자인과, 건축설비설계학(과·전공),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건축설비자동화과, 건축설비학(과,전공), 건축설비환경과, 건축소방설비(학)(과·부·전공),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공단유지보수전공, 공장자동화과, 공조기계(과·전공), 공조냉동(과,학과), 공조냉동에너지시스템전공, 광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광통신설비과, 국방물자과, 국방특수기술과, 그린에너지설비(과·전공), 기계·자동화시스템계열, 기계냉동자동차공학부,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및시스템공학부, 기계산업시스템(계열,공학부), 기계설계생산자동화공학전공, 기계설비과, 기계설비관리전공, 기계설비소방안전과, 기계섬유신소재공학군, 기계시스템(계열,공학과,공학전공,공학부,과,부), 기계시스템전공, 기계·해양시스템공학부,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기계원자력공학부, 기계자동제어공학부, 기계자동화(계열,공학부), 기계자동화정보계열, 기계재료식품공학과군, 기계전기계열, 기계전기제어과, 기계전자(공학부,과), 기계제어공학부, 기계제어시스템공학부, 기계해양시스템공학부, 나노과학기술학(과,부),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전공), 나노시스템공정공학(과·전공), 나노융합공학(과,전공), 나노측정과, 나노테크놀로지전공, 냉난방공조제어과,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냉동공조공학(과,전공), 냉동공조과, 냉동공조설비(과·전공), 냉동공학(과,전공), 냉동공학전기및반도체공학과군, 녹색산업설비((학)과,전공), 농공농업기계공학(부,과군), 농공·농기계공학과군, 농업기계(학과,전공), 농업기계공학(과,전공),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과, 동력시스템공학(과,전공),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디지털기계학부, 디지털모터과, 디지털설계전공, 디지털시스템동력시스템공학(과·전공), 디지털자동화정보계열, 디지털자동화학과, 로봇테크과, 로봇공학(과·전공), 로봇디자인전공, 로봇시스템공학과, 로봇자동화(과·전공), 로봇제어(과,전공), 마이크로로봇과, 메카트로닉스·자동화정보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부,전공,협동과,계열정보학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전공,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전공), 방송통신설비과, 빌딩설비디자인과, 빌딩설비시스템(과,전공,코스), 빌딩자동화과, 산업공학(과·전공), 산업공학·정밀기계·토목공학과군, 산업공학정밀기계과, 산업기계공학과, 산업기계시스템공학전공, 산업기계정비학과, 산업및기계시스템공학부, 산업설비자동화과, 산업설비제어과, 산업설비학과,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산업시스템설계과, 산업자동화공학과, 생물산업기계(학)(과·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과,전공),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산기계(공학과,과,전공), 생산시스템전공, 생산자동화시스템(학)(과·전공), 생산자동화전공, 선박해양·기계(과,전공), 설비(계열·과·전공), 소방안전시스템전공, 승강기기계설계(과·전공), 승강기메카트로닉스(과·전공), 승강기보수(과·전공), 승강기시스템관리학(과,전공), 승강기안전관리(과·전공), 승강기전기설계(과·전공), 시스템공학선박기계공학과, 시스템설계전공, 시스템안전설계계열, 시스템제어(공학)(과,전공,부), 시스템제어(공학)(과·전공·부), 시스템제어정비과, 식품공학·농업기계공학과군, 실내환경시스템(과·전공), 열기계학과, 열냉동과, 열냉동관리과, 열처리과, 응용기계공학과군, 응용기계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및산업공학과군, 의용메카트로닉스(과,전공), 인터넷전자정보(전공,계열),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자동제어학과, 자동화(과·전공·계열), 자동화공학과, 자동화기계공학과, 자동화기계과, 자동화로봇(과,전공), 자동화설비학과, 자동화시스템(과,전공,코스), 자동화시스템공학과, 자동화전기과, 자동화정보공학부,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기계공학과, 전기기기제어전공, 전기설비자동화전공, 전기시스템(과,전공), 전기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디자인과, 전기시스템제어전공, 전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자동화과, 전기전자기계과,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자동화정보계열, 전기제어공학(과,부,전공), 전기제어과, 전기제어생체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과, 전자·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과,전공,계열),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과·전공), 정밀기계(과·전공), 정보기계공학전공, 정보메카트로닉스전공, 정보자동화공학부, 정보통신기계과, 제어계측(과,학과,전공), 제어계측공학(과·전공), 제어자동화공학(과·전공), 지능기계공학전공, 컴퓨터로봇공학과,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응용자동화과, 컴퓨터응용전기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컴퓨터응용제어(공학과,과,전공), 컴퓨터자동화기계과, 컴퓨터자동화설계과, 컴퓨터자동화시스템과, 컴퓨터전기시스템과, 컴퓨터전기자동화과, 특수건설설비전공, 특수장비과, 특수장비·통신계열, 플랜트설계과, 플랜트설비자동화과, 함정기관학(과,전공), 함정특수장비과, 화학생명공학·기계공학계열, 환경설비공학과, LCD반도체시스템(과·전공)</p>
	166 자동차	<p>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자동차(계열,공학과,학과군,학부,학전공,과), 기계자동차디자인학부, 기계자동차산업계열, 기계자동차설계학과, 기계차량공학과, 모터스포츠전공, 자동차(학)(과·전공·부), 자동차개발전공, 자동차검사전공, 자동차경영관리전공, 자동차공학(과·부·전공·계열),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금형기술전공, 자동차기계(과,전공,학부,계열), 자동차기계공학(부,전공), 자동차기계디자인과, 자동차기계설계전공, 자동차기계전자공학부, 자동차기술과, 자동차디자인(학과,전공), 자동차디자인테크(과·전공), 자동차디지탈튜닝(과·전공), 자동차레저문화계열, 자동차메니저과, 자동차메카트로닉스전공, 자동차사무관리과, 자동차산업공학부, 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 자동차생산공학전공, 자동차서비스(과,전공), 자동차소방계열, 자동차시스템설계과, 자동차시스템전공, 자동차시험(과,전공), 자동차·모터스포츠(과·전공·부), 자동차·정보공학부, 자동차에너지전공, 자동차유지관리(과,전공), 자동차전기계열, 자동차전기전자(과,전공), 자동차전자(과,전공), 자동차전장과, 자동차정비(과,전공), 자동차정비검사설계(과·전공), 자동차정비검사전공, 자동차정비튜닝(과·전공), 자동차제어및진단기술(과,전공), 자동차튜닝(과,전공), 자동차튜닝제어과,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자동차환경에너지전공, 전문기계자동차공학((학)과,전공), 차량기계(과,학부), 카메카트로닉스학과, 카일렉트로닉스(과,전공), 컴퓨터기계/자동차계열, 타이어전공, 특수차량(과·전공), 하이브리드자동차(과·전공), SUV/BOSCH전공</p>
17 재료	174 용접	<p>디지털용접학과, 용접(공학과,과,전공), 용접공업과, 용접기술과, 유도탄약과, 자동화용접과, 조선해양공학(과,부,전공), 조선해양플랜트(과·전공), 총포광학과</p>
20 전기·전자	201 전기	<p>건축전기설비과, 건축전기시스템과, 고속전기철도과, 광전기공학전공, 광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광전자재료전공, 그린산업기술(과·전공), 기계및제어공학과, 기계자동제어공학부, 기계전기계열, 기계전기제어과, 기계제어공학부, 기계제어시스템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과·전공), 디지털의료정보전기계열, 디지털전기(과·전공·부·계열), 디지털전기디자인과, 디지털전기정보(과,전공,학부,계열), 디지털전기제어전공, 디</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디지털전기통신과, 디지털정보제어공학(과,전공), 디지털정보제어학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반도체전기자동차공학부, 발명특허공무원학(과·전공), 발명특허학(과·전공), 산업및전기공학계열, 산업전기공학과, 선박기계·에너지시스템(과·전공), 선박에너지시스템공학(과·전공), 선박전기(과·전공), 승강기메카트로닉스(과·전공), 승강기보수(과·전공), 승강기안전관리(과·전공), 승강기전기설계(과·전공), 신소재전기공학부, 신재생에너지(과·전공), 신재생전기에너지학(과·전공), 아트조명과, 에너지그리드학(과·전공), 열냉동과, 열냉동관리과, 열전기에너지시스템과, 열처리과, 유도무기과, 의료전기전자과, 의용전기전자과, 의전기전자과, 일렉트로닉스패키징, 자동차전기계열, 자동차전기전자(과,전공), 자동차전기과, 전기(학)(과·전공·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전기·반도체·제어공학군,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재료·제어공학군, 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군, 전기계열학과군, 전기계측제어과, 전기공사학과, 전기공학(과,부,전공), 전기공학교육과, 전기광전자공학부, 전기기계공학과, 전기기기제어전공, 전기기술전공, 전기및반도체공학(과,전공), 전기및반도체공학과군,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전기방송(과,계열), 전기설비(과,전공), 전기설비자동화전공, 전기소방계열, 전기소방시스템전공, 전기소방안전(과·전공), 전기시스템(과,전공), 전기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디자인과, 전기시스템제어전공, 전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선박시운전(과·전공),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공학교육(과,학과군), 전기·전자·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전공), 전기·컴퓨터제어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과,전공),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전공), 전기자동화과, 전기자동화정보(과,전공), 전기재료공학과, 전기전산계열, 전기전산공학과, 전기전자(과,전공,계열), 전기전자공학(과,부,전공,군,계열), 전기전자기계과, 전기전자멀티미디어공학부,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과,부),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자동화정보계열, 전기전자전산(계열,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전기전자정보(전공,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기전자정보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군,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공),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과군,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전자제어통신공학과군,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부,전공), 전기전자통신(학과·학부·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부,과군), 전기전자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과군), 전기정보과, 전기정보과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정보·전자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과, 전기정보통신계열,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기제어공학(과,부,전공), 전기제어과, 전기제어생체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과, 전기제어전자정보통신공학과군,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통신공학(과·전공), 전기통신설비과, 전력설비자동화(과,전공), 전력시스템전공, 전자·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전자전기공학(과,부,전공),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자전기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전공),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전자전기통신공학(부,전공), 전자정보공학(과,부,전공), 전자정보전기공학부, 전자제어공학(과,부), 전자제어과, 전자제어통신공학부,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과,전공), 전자통신전기공학부, 전파·전기시스템·전자통신공학과군, 정밀계측(과,전공), 정보전자전기공학과군, 정보전자통신계열, 제어(과,전공), 제어계측(과,학과,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어계측공학(과·전공), 제어계측시스템(과,전공), 제어기계공학과, 제어시스템공학(과,전공), 제어시스템정보과, 제어자동화공학(과·전공), 제어자동</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화시스템공학전공, 조명인테리어(학)(과,전공), 조선/선박시운전(과·전공), 조선전기제어((학)과, 전공), 철도기술전공, 철도운전기전(과·전공),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전기(과,전공), 철도전기·정보통신학부, 철도전기시스템 학(과·전공), 철도전기신호학(과·전공), 철도전기·기관사(과·전공),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차량전기과, 컴퓨터응용전기(과,전공,계열), 컴퓨터응용전기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컴퓨터응용제어(공학과,과,전공), 컴퓨터전기공학부, 컴퓨터전기시스템과, 컴퓨터전기자동화과, 컴퓨터전기전자계열, 컴퓨터전기전자공학과군, 컴퓨터전기정보학(과·전공), 컴퓨터제어(과,전공),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전공), 항공전기과, 항공전기제어과, 헬기정비과, 환경화학섬유전기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e-CAD(과·전공), IT응용시스템공학(과·전공), SG전기전자제어(과·전공), TV촬영조명과
	202 전자	건축컴퓨터공학과군, 게임(전공,학과,학부), 게임,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 미디어전공, 게임, 소프트웨어전공, 게임, 애니메이션학과, 게임개발공학(과,전공), 게임공학(과,전공),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게임기획학(과,전공), 게임디자인공학(과·전공), 게임디자인컨텐츠표준전공, 게임디지털컨텐츠전공, 게임멀티미디어(전공,학과), 게임소프트웨어(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학부), 게임웨어(과,학과), 게임제작(계열,학과,전공), 게임창작과, 게임컨설팅과, 게임컨텐츠전공, 게임프로그래밍학과, 게임PD전공, 경찰사이버보안과, 계산통계학과, 계측정보처리전공, 계측제어과, 관광멀티미디어(과·전공), 관광컴퓨터정보계열, 광(광과,학과), 광기술공학과, 광반도체정보공학과, 광응용과학전공, 광응용학과, 광전기공학전공, 광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광전자(공학과,공학전공,과),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전공, 광전자물리(전공,학과,학전공), 광전자재료전공, 광전자정보공학(과·전공·부), 광전자정보통신과, 광전자통신과, 광전자화공소재전공, 광정보미디어공학과, 광정보통신과, 광통신설비과, 광통신전자공학부, 광공학학과, 국방과학기술학(과·전공), 국방전자통신(과·전공), 국제정보통신과, 군산관학특약계열, 그래픽게임전공, 그래픽아트미디어과, 글로벌IT학과, 금융전산과, 기계의용공학(과·전공), 기계전자(공학부,과), 기계컴퓨터공학과군, 기전공학(과,전공),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나노공학(과,부,전공), 나노과학기술학(과,부), 나노과학부, 나노-광공학과,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전공), 나노바이오화학과, 나노반도체(과·전공), 나노생명과학공학과, 나노생명소재공학(과,전공), 나노생명화학공학과(과,전공), 나노생체화학공학부, 나노소재(과·전공), 나노소재공학(과,전공), 나노소재·응용화학공학부, 나노소재응용공학부, 나노소재학전공, 나노소재화학전공, 나노시스템공정공학(과·전공), 나노시스템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과,학부), 나노융합공학(과,전공), 나노재화학전공, 나노전자물리전공, 나노정보공학전공, 나노정보소재공학(과·전공), 나노측정과, 나노화학공학과, 나노화학소재공학과,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내장형하드웨어(학)과, 냉동공학전기및반도체공학과군, 네트워크(과,전공), 네트워크·서버과, 네트워크전자계열, 네트워크정보공학부, 네트워크정보과, 네트워크정보통신(과,전공), 뉴미디어(과,학과,학부,전공), 뉴미디어디자인(과,전공), 뉴미디어음악학과, 다매체영상학과, 데이터정보전공, 데이터베이스응용(공학)전공, 데이터베이스전공, 데이터정보학과, 동서의료공학(과,전공),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디스플레이전공, 디스플레이전자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전공), 디지털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건축전공, 디지털게임공학과, 디지털게임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게임전공, 디지털경영학과, 디지털공학과, 디지털광고디자인(과,전공), 디지털광고사진과, 디지털그래픽디자인(과,전공), 디지털기계학부,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과,전공), 디지털디스플레이전자((학)과,전공), 디지털디자인(학)(과·전공·부·계열), 디지털디자인·건축학과, 디지털만화과, 디지털모터과, 디지털문예창작과, 디지털문화예술학부,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학부,전공),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과,전공), 디지털문화학부, 디지털물리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전공·부), 디지털미디어공학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부,전공), 디지털방송(과,전공), 디지털방송미디어과, 디지털방송영상과, 디지털방송통신(공학)전공, 디지털사무정보과, 디지털사진,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사진영상(과,전공), 디지털산업디자인(과,계열), 디지털산업전자과, 디지털설계전공, 디지털시각디자인과, 디지털시스템(전공,계열), 디지털시스템공학(과·전공), 디지털시스템동력시스템공학(과·전공), 디지털아트(과,학부), 디지털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디자인(과,학부), 디지털엔터테인먼트학과, 디지털영상(학)(과·전공·부·계열), 디지털영상광고전공, 디지털영상그래픽학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디지털영상매체전공, 디지털영상미디어과, 디지털영상미디어창업계열, 디지털영상애니메이션과, 디지털영상정보(과,학부,계열), 디지털영상콘텐츠과, 디지털영화제작전공, 디지털융접학과, 디지털음악과, 디지털의료정보전기계열, 디지털인테리어과, 디지털자동화정보계열, 디지털자동화학과, 디지털전기(과·전공·부·계열), 디지털전기디자인과, 디지털전기정보(과,전공,학부,계열), 디지털전기제어전공, 디지털전기통신과, 디지털전자(과·전공), 디지털전자/정보통신계열, 디지털전자공학(과,부), 디지털전자디자인과, 디지털전자정보(과,계열), 디지털전자정보공학부, 디지털전자통신(과,전공), 디지털정보(과,전공,계열), 디지털정보공학(부,전공), 디지털정보미디어전공, 디지털정보전자(과,전공), 디지털정보전자공학전공, 디지털정보제어공학(과,전공), 디지털정보제어학과, 디지털정보통신(과,학과,전공,계열), 디지털정보통신공학과, 디지털정보학(과,부), 디지털제어공학전공, 디지털제품디자인(과,전공), 디지털출판과, 디지털출판미디어학과, 디지털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학부), 디지털컨텐츠디자인(과,전공), 디지털컨텐츠제작전공, 디지털컨텐츠(과,전공,학과,학부), 디지털컨텐츠디자인(과·전공), 디지털컨텐츠비즈니스전공,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VR전공, 레이저광정보공학전공, 로봇테크과, 로봇, 제어공학전공, 로봇공학(과·전공), 로봇금형디자인전공, 로봇시스템공학과, 로봇전자과, 로봇제어(과,전공), 마이크로로봇과, 마이크로프로세서전공, 매체(과·전공), 매체공학과, 매체예술(과·부·전공), 매체정보학(과·전공), 멀티미디어(계열·공학(과·전공)·공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계열,과,전공,학부), 멀티미디어방송과, 멀티미디어비즈니스과, 멀티미디어사무응용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전공,과,학과),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전공), 멀티미디어시스템전공, 멀티미디어·게임공학전공, 멀티미디어영상학(과,학부), 멀티미디어웹전공, 멀티미디어음악과, 멀티미디어인터넷응용전공, 멀티미디어자율전공부, 멀티미디어정보(과학,관리계열), 멀티미디어정보(전공,전산학부), 멀티미디어정보계열, 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전공, 멀티미디어정보·영상공학부, 멀티미디어정보처리전공,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학과,계열,공학과), 멀티미디어정보학과, 멀티미디어창작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컴퓨터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과,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공학(과·전공), 멀티미디어통신표준전공, 멀티미디어편집과, 멀티미디어학(과,학부,전공), 멀티영상디자인전공, 멀티오피스인터넷공학부, 멀티인터넷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부,전공,협동과,계열정보학부), 모바일미디어전공, 모바일게임과, 모바일네트워크(과,전공), 모바일넷(과,전공), 모바일멀티미디어(과,전공), 모바일소프트웨어(공학전공,과), 모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                     바일웹마스터과, 모바일인터넷과, 모바일전공, 모바일정보기술(과,전공), 모바일정보통신(과,전공), 모바일컴퓨터전공, 모바일콘텐츠(과,학과,전공), 모바일통신과, 무대조명·음향(과·전공), 무선인터넷콘텐츠전공, 무선정보통신전공, 문화콘텐츠(전공,학과), 문화콘텐츠.이벤트디자인전공, 문화콘텐츠개발과, 물리및응용물리학(과·전공), 물리반도체(과학부,과학전공,학부), 미디어(학)(과·전공), 미디어공학전공, 미디어디자인(계열,전공), 미디어디자인(학부,콘텐츠학부), 미디어미술과, 미디어사진과, 미디어시스템전공, 미디어아트(전공,학부), 미디어아트디자인과, 미디어연예학전공, 미디어영상(과,학과,학부), 미디어영상시스템과, 미디어영상전자과, 미디어영상학(과,부), 미디어정보계열, 미디어정보공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테크놀로지학과, 미디어통신공학전공, 미디어홍보출판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전공, 바이오정보전자전공, 반도체공학(과,전공), 반도체과학(과,기술학과,전공), 반도체광디스플레이학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전공), 반도체물리(과·전공), 반도체및신소재공학과, 반도체및전파통신전공, 반도체설계공학전공, 반도체설계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반도체응용(전공·물리학과), 반도체전공, 반도체전기자동차공학부, 반도체전자(전공,공학부), 반도체학(과,과군), 반도체ATE공학과, 반도체CAD(과·전공), 반도체IT공학과,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 방송전자과, 방송정보전자과, 방송정보통신(과,계열), 병원의료공학과, 병원전산전공, 보건의료공학과, 보건의료기기과, 보건의료전자(과·전공), 보건IT산업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비주얼콘텐츠디자인전공, 비즈니스소프트웨어전공, 사이버오피스전공, 사이버응용전공, 사이버테러대응과, 산업전산(과,공학부,학과,전공), 생명정보공학(과,전공), 생물기전공학(과,전공), 생체공학(과,전공), 생체의공학(과·전공), 생체정보(과)공학부, 생체정보과, 생체정보시스템(과·전공), 생체컴퓨터학과, 선박전자기계공학부, 설계CAD전공, 세라믹반도체재료전공, 소프트웨어(학)(과·전공·부), 소프트웨어·게임학부, 소프트웨어개발(학)(과,전공), 소프트웨어공학(과,전공), 소프트웨어시스템전공, 소프트웨어응용전공, 소프트웨어정보(과,전공), 솔라반도체(과·전공), 솔루션전공, 수리정보·반도체물리학부, 수리정보·반도체학과군, 수리정보통계학부, 수리정보학(과,부), 수리컴퓨터학부, 수학물리학부수학물리화학계열, 수학·신소재물리학부, 수학·전산통계학부, 수학·정보통계학(부,과군), 수학전산통계학(부,학과군), 수학기초물리학부, 수학기초통계학부, 수학기초학과, 수학기초통계학부, 수학기초정보과학부, 수학기초컴퓨터과학과군, 승강기메카트로닉스(과·전공), 승강기보수(과·전공), 승강기시스템관리학(과,전공), 승강기안전관리(과·전공), 승강기전기설계(과·전공), 시스템및제어전공, 시스템응용공학부, 시스템정보공학과, 시스템제어(공학)(과·전공·부), 시스템제어정비과, 시스템프로그래밍전공, 신물질과학전공, 신소재물리학전공, 신소재전자계열, 신재생에너지(과·전공), 신재생전기에너지학(과·전공), 실용소프트웨어전공, 실용전자공학과, 아동컴퓨터교육전공, 아동컴퓨터보육전공, 아동컴퓨터전공, 안경광학과, 에너지그리드학(과·전공), 에너지정보(과·전공), 영상광정보공학부, 영상광학전공, 영상정보공학부, 영상정보전자전공, 영상콘텐츠(과,전공), 영상콘텐츠개발전공, 영화영상·멀티미디어공학부, 운영분석학(과·전공), 원자력과정포·광학장비과, 웹, 컴퓨터응용계열, 웹디자인(과,전공), 웹디자인매니저먼트과, 웹마스터(과,전공), 웹멀티미디어(과,전공), 웹모바일보안과, 웹모바일정보(과,전공), 웹미디어전공, 웹사무정보과, 웹서비스전공, 웹스타일리스트(과,전공), 웹응용공학(과,전공), 웹정보공학(과,전공), 웹정보산업과, 웹정보처리(과,전공), 웹콘텐츠개발(과,전공), 웹컴퓨터과, 웹코디네이션과, 웹콘텐츠전공, 웹프로그래밍(과,전공), 위성정보(과)공학                 </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과, 위성정보과학과, 유도무기과, 유비쿼터스통신(과·전공), 유비쿼터스IT(학)(과·전공), 음악녹음전공, 음향(학)과, 음향공학과, 음향미디어전공, 음향전자기기학과, 음향제작(과,전공,계열), 응용물리전자학(과·전공), 응용물리학(과,전공), 응용소프트웨어개발전공,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응용수리학부, 응용수학(과,전공), 응용수학·반도체학과군, 응용수학반도체응용물리학과군, 응용수학응용물리학과군, 응용전자공학과, 응용정보처리과, 응용정보통계학전공, 응용컴퓨터공학전공, 응용컴퓨팅전공, 의공학(과·전공·부), 의공학특성화연계(과·전공), 의료공학과(과,부,전공), 의료공학과, 의료공학프로그램(과·전공), 의료기공학과, 의료기기정보과, 의료기기학과, 의료기정보과, 의료보장구(과,학과), 의료생체공학과, 의료생체공학프로그램(과·전공), 의료시스템공학부, 의료시스템정보과, 의료·멀티미디어계열, 의료전기전자과, 의료전산행정과, 의료전자(과,전공), 의료전자정보과, 의료전자학(과,부),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공학(과,전공), 의료정보과, 의료정보관리과, 의료정보시스템(과,전공), 의료IT공학(과·전공), 의용공학(과·전공), 의용메카트로닉스(과,전공), 의용메카트로닉스과, 의용전기전자과, 의용전자공학(과,전공), 의용전자공학과, 의용정보전공, 의학공학부, 이미지시스템공학전공, 이미지시스템전공, 인공지능(학과,전공), 인공지능컴퓨터학과, 인쇄과, 인터넷, 컴퓨터응용계열, 인터넷가상현실(학과,전공), 인터넷게임(과,전공), 인터넷공학(과,부,전공), 인터넷과, 인터넷기업응용전공과전공, 인터넷네트워크과, 인터넷멀티미디어학부,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인터넷미디어(학)(과,전공), 인터넷미디어정보과, 인터넷방송(학)(과,전공,계열), 인터넷보안(학)과, 인터넷사무자동화(과,전공,계열), 인터넷사무정보(과,전공), 인터넷산업경영계열, 인터넷산업공학부, 인터넷산업정보공학전공,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과,부), 인터넷소프트웨어학과, 인터넷·IT공학부, 인터넷오피스정보과, 인터넷운용관리과, 인터넷웹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응용(과,전공,계열), 인터넷응용공학(과,전공), 인터넷응용·방송전공, 인터넷전공, 인터넷전산정보전공, 인터넷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전자정보(전공,계열), 인터넷정보(과,계열), 인터넷정보공학(과,전공), 인터넷정보과학과, 인터넷정보관리전공, 인터넷정보기술(과,계열), 인터넷정보미디어(학과,계열), 인터넷정보보안해킹과, 인터넷정보시스템전공과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인터넷정보전자계열, 인터넷정보처리(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전공,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계열, 인터넷정보통신공학(전공), 인터넷정보학(과,부,전공), 인터넷컴퓨터(학과,계열), 인터넷콘텐츠전공, 인터넷테크노, 멀티미디어계열, 인터넷통신(과·전공), 인터넷통신공학전공, 인터넷품질경영과, 인터넷프로그래밍(과,전공), 인터넷프로그램학전공, 인터넷하이테크계열, 인터넷학(과,부), 인터넷학과전산학과, 인터넷DB전공, 인터넷IT계열, 인터넷IT공학부, 인터넷SW전공, 인터넷TV방송과, 인테리어디지털디자인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임베디드시스템(과·학과·공학과), 임베디드통신공학전공, 자동차전기전자(과,전공), 자동차전자(과,전공), 자동화(과·전공·계열), 자동화공학과, 자동화정보공학부, 재활공학전공, 전기(학)(과·전공·계열), 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전기·반도체·제어공학군, 전기·전자·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교육전공, 전기·전자재료·제어공학군, 전기·제어·신소재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군, 전기광전자공학부, 전기및반도체공학(과,전공), 전기및반도체공학과군,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전기설비(과,전공),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공학교육(과,학과군), 전기·전자·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전공), 전기·컴퓨터제어공학부,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전공), 전기전산계열, 전기전산공학과, 전기전자(과,전공,계열),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공학(과,부,전공,군,계열), 전기전자기계과,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전기전자멀티미디어공학부,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과,부),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자동화정보계열, 전기전자전산(계열,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전기전자정보(전공,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기전자정보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공),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전자제어통신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부,전공), 전기전자통신(학과·학부·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부,과,군), 전기전자학부,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정보·전자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공학부, 전기정보제어과, 전기정보통신계열,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기제어공학(과,부,전공), 전기제어과,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 전기제어시스템과, 전기제어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기컴퓨터공학부, 전력시스템전공, 전력전자전공, 전산(학)(과·전공·계열), 전산공무원양성전공, 전산공무원전공, 전산공학(과,전공), 전산과전산정보과, 전산과학(과,전공), 전산기공학부, 전산사무과, 전산사무자동화과, 전산사무정보학부, 전산수학(과,부,전공), 전산수학과·전산학과, 전산수학의료경영(보건학과)군, 전산수학콘텐츠학(과·전공), 전산·게임학과, 전산응용공학과, 전산응용과, 전산전자공학부, 전산전자물리학(과,전공), 전산정보(학)(과·부·전공·계열), 전산정보공학과, 전산정보과학과, 전산정보관리학과, 전산정보보호학(과,전공), 전산정보수학(과,부,전공), 전산정보응용통계학부, 전산정보처리(과,부,전공), 전산정보통신(과,계열), 전산정보통신공학부, 전산커뮤니티전공, 전산통계(학)(과,부,전공), 전산통신전공, 전산행정관리전공, 전자(학)(과·전공·계열), 전자·전기·제어공학전공, 전자·전자계산·기계공학과,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전자계산(학)(과,전공,부), 전자계산공학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계산환경과학과, 전자공학(과,부,전공), 전자공학교육과, 전자공학컴퓨터학계열, 전자과학(과·전공), 전자광공학부, 전자기계공학부, 전자기기학과, 전자매체공학부, 전자매체공학부(전자물리학), 전자물리학(과,부,전공), 전자미디어공학전공, 전자미디어과, 전자및정보공학부, 전자및통신공학전공, 전자및항공전자공학전공, 전자시스템공학(과,부,전공), 전자신소재(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부,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 전자·전산·전파공학부, 전자·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공군), 전자유도기술학(과·전공), 전자응용계열, 전자의용공학부, 전자재료공학(과,전공), 전자재료과학전공, 전자재료응용학과, 전자전기공학(과,부,전공),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자전기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전공),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전자전기통신공학(부,전공), 전자전산공학과, 전자전산전파공학부, 전자전파계열, 전자전파공학전공,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전자정보(과,전공,계열), 전자정보공학(과,부,전공), 전자정보공학·제어계측공학과, 전자정보공학제어계측공학과, 전자정보기술전공, 전자정보보호공학부, 전자정보산업학부, 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전자정보응용과, 전자정보전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과,전공,계열), 전자정보통신공학(과,부,군,전공), 전자정보통신반도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제어계열, 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학(과,부), 전자제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과,부), 전자제어과, 전자제어통신공학부, 전자지능로봇공학(과·전공), 전자출판(과,전공), 전자출판디자인과, 전자출판인쇄전공, 전자컴퓨터계열,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과,전공),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전자통신(과,전공,계열), 전자통신공학(과,부,전공,전공군,계열), 전자통신시스템학과, 전자통신전기공학부, 전자통신전파공학(과·부·전공), 전자통신정보공학부,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통신컴퓨</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터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통신학(과,부), 전자편집디자인과, 전자회로설계전공, 전자회로실무과, 전자PCB계열, 전파·전기시스템·전자통신공학과과군, 전파공학(과,전공), 전파이동통신공학(과,전공), 전파이동통신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부, 전파통신(학)(과·전공), 전파통신공학(과,전공), 정밀계측(과,전공), 정보검색과, 정보검색통계전공, 정보검색활용전공, 정보계열, 정보공학(과,부,전공), 정보과학(과,전공,부,계열), 정보관리(학)(과·전공), 정보기계공학전공, 정보기술(학)(과·전공·부·계열), 정보기술공학(과,부,과군), 정보기술교육전공, 정보기술응용공학전공, 정보기술컴퓨터공학부,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전공,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정보매체공학부, 정보메카트로닉스전공, 정보물리학(과,전공), 정보미디어(학)(과,부,전공,과군), 정보및컴퓨터공학부, 정보보안(과,전공), 정보보안·해킹(과,전공), 정보보안공학과, 정보보호(학)(과,전공),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관리학전공, 정보보호기술공학과, 정보보호및전자상거래학과, 정보보호시스템전공, 정보분석학과, 정보사무자동화과, 정보산업(학)(과·부·전공·계열), 정보산업공학(과,전공), 정보소자공학전공, 정보소자학과, 정보소재공학(과,전공), 정보수리·전산통계학과과군, 정보수리과학부, 정보수리·전산통계학부, 정보수리프로그래밍전공, 정보수리학(과,전공), 정보수학(과,전공), 정보수학·전산통계학과과군, 정보시스템(학)(과,전공,과군), 정보시스템개발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부,전공), 정보·컴퓨터공학전공, 정보운영분석학(과·전공), 정보응용학부, 정보자동화공학부, 정보전산(학)(과·전공·부·공학과), 정보전산공무원계열, 정보전산소재공학과, 정보전송설비과, 정보전자(과,전공,계열), 정보전자공학(과,부,전공,과군), 정보전자공학교육과, 정보전자소재공학(과·전공), 정보전자영상공학부, 정보전자전기공학과과군, 정보전자통신계열, 정보전자통신공학부, 정보전자통신과, 정보전자학과과군, 정보제어계측공학(과,부), 정보제어공학(과,전공), 정보처리(학)(과·전공·계열), 정보처리공학과, 정보처리실무전공, 정보처리응용과, 정보컨텐츠과, 정보컨텐츠디자인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학부, 정보컨텐츠과, 정보통계(학)(과,전공), 정보통계·보협수리학과, 정보통신(학)(과·부·전공·과군), 정보통신공학(과,부,전공,과군,계열), 정보통신네트워크전공, 정보통신디지털영상학부,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미디어계열, 정보통신및컴퓨터공학(과,부,전공), 정보통신사이버경찰학과, 정보통신산업공학부, 정보통신설비과, 정보통신시스템(과,전공), 정보통신시스템공학(부,전공), 정보통신영상계열, 정보통신응용전공, 정보통신인터넷공학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정보통신전파공학(부,전공),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학(과,부,전공,과군), 정보통신홈네트워크(과·전공), 정보통신S/W공학(과,전공), 정보행정기술과, 제어계측(과,학과,전공), 제어계측건축설비공학부, 제어계측공학(과·전공), 제어계측로봇공학(과·전공), 제어기계공학과, 제어시스템공학(과,전공), 제어시스템정보과, 제어자동화공학(과·전공),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전공, 제조IT연계전공, 조선정보기술계열, 지구물리학과, 지능로봇공학(과·전공), 지능로봇·신소재공학전공, 지능정보공학전공, 지식정보(공)학부, 지식정보산업공학과, 진공과학공학협동과정, 차세대통신소프트웨어전공,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전기(과,전공), 철도전기·정보통신학부,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전산과, 철도전자과, 철도통신((학)과·전공), 철도행정전산(과·전공), 첨단과학부, 첨단기계설계(과·전공), 초고속정보통신과, 총포광학과, 총포광학장비과, 출판미디어(과·전공), 캐드그래픽과, 캐드응용설계(공학)과, 컨텐츠전공, 컴퓨터(과,계열), 컴퓨터, 인터넷공학전공,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컴퓨터·영상공학부, 컴퓨터·인터넷정보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컴퓨터·IT공학부(전산공학전공), 컴퓨터·IT공학부(정보공학전공), 컴퓨터게임(개발)</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p>과, 컴퓨터게임(학)(과,전공), 컴퓨터게임, 그래픽전공, 컴퓨터게임산업(학)전공, 컴퓨터게임정보과, 컴퓨터게임제작과, 컴퓨터공학(과,부,전공,군,과군,계열), 컴퓨터공학-매체공학과군, 컴퓨터공학교육과, 컴퓨터과학(과,학과,부,전공), 컴퓨터교육(학)과, 컴퓨터구조응용전공, 컴퓨터그래픽(스)(과,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부,전공), 컴퓨터그래픽학(과,전공), 컴퓨터기술전공, 컴퓨터기전공학과군, 컴퓨터네트워크(과·전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과, 컴퓨터네트워크·보안전공,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컴퓨터디자인(학)(과,부,전공,계열),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과,전공,계열),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전공,과군,전공군),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공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부,전공), 컴퓨터문화산업계열, 컴퓨터물리시뮬레이션학과, 컴퓨터물리학과, 컴퓨터미디어(과,계열),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컴퓨터미디어기술전공, 컴퓨터미디어정보과, 컴퓨터미디어학(과,부), 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과,부,전공), 컴퓨터보안/해킹전공, 컴퓨터보안과, 컴퓨터사무자동화계열, 컴퓨터사무정보계열, 컴퓨터사이언스과, 컴퓨터산업공학(부,전공), 컴퓨터산업디자인과, 컴퓨터산업응용계열학과군, 컴퓨터산업정보과, 컴퓨터서비스(과,전공), 컴퓨터설계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부,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전공, 컴퓨터솔루션전공, 컴퓨터수리정보학과, 컴퓨터시각디자인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컴퓨터시스템(표준)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공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관리전공,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시스템정보공학부, 컴퓨터·로봇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IT공학부, 컴퓨터안전관리학전공, 컴퓨터영상정보과, 컴퓨터영상정보통신학과군, 컴퓨터웹정보과, 컴퓨터유지관리전공, 컴퓨터응용(과,계열), 컴퓨터응용가공전공, 컴퓨터응용개발과, 컴퓨터응용건축과, 컴퓨터응용공학부, 컴퓨터응용과학(과,부,과군),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학과,학부,전공,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공학과, 컴퓨터응용물리(과,전공), 컴퓨터응용설계(과,전공,공학과,학전공,계열), 컴퓨터응용수학(과,전공), 컴퓨터응용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응용인터넷전공, 컴퓨터응용자동화과, 컴퓨터응용전공, 컴퓨터응용전기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컴퓨터응용전자(과,전공), 컴퓨터응용정보과, 컴퓨터응용제어(공학과,과,전공), 컴퓨터응용학(부,과군), 컴퓨터이동통신과, 컴퓨터인터넷(과,전공,계열), 컴퓨터인터넷정보(과,계열,전공), 컴퓨터임베디드(학)과, 컴퓨터자동화공학전공, 컴퓨터자동화기계과, 컴퓨터자동화설계과, 컴퓨터자동화시스템과, 컴퓨터전공, 컴퓨터전기공학부, 컴퓨터전기시스템과, 컴퓨터전기자동화과, 컴퓨터전기전자계열, 컴퓨터전기전자공학과군, 컴퓨터전자(계열·과), 컴퓨터전자공학(부,전공,계열,과), 컴퓨터전자물리학과, 컴퓨터전자전공, 컴퓨터전자전기계열,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전자학과, 컴퓨터정보(과·전공·계열), 컴퓨터정보공학(과·전공·부), 컴퓨터정보과학(과,부), 컴퓨터정보관리(과,전공), 컴퓨터정보기계과, 컴퓨터정보기술(과,학부,계열), 컴퓨터정보미디어계열, 컴퓨터정보보안학과, 컴퓨터정보산업공학부, 컴퓨터정보수리학과, 컴퓨터정보수학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과,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정보전공,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전자응용계열, 컴퓨터정보제공전공, 컴퓨터정보처리(과,부,계열), 컴퓨터정보처리(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과,학과,학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전공,군), 컴퓨터정보통신디자인계열, 컴퓨터정보학(과,부,전공), 컴퓨터정보활용과, 컴퓨터제어(과,전공),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전공), 컴퓨터제품디자인과, 컴퓨터제품설계과, 컴퓨터캐드전공, 컴퓨터통계수학전공, 컴퓨터통계정보학과, 컴퓨터통계학과, 컴퓨터통신(학)(과·전공</p>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관련 학과
		• 계열), 컴퓨터통신공학과, 컴퓨터통신전자공학부, 컴퓨터튜닝(과·전공), 컴퓨터프로그래밍(과,학과,전공), 컴퓨터학(부,전공,과), 컴퓨터학과정, 콘텐츠디자인전공, 테크노과학부, 테크노정보(산업)과, 통계정보학(과,전공), 통계학(과,전공), 통신(학)과, 통신공학(과,부,전공), 통신전자과, 통신컴퓨터공학부, 특수무기과, 특수전자정보학과, 프로그래머·해킹보안과, 하이테크CAD/CAM(과,전공), 한방시스템공학(과·전공), 한방의공학(과·전공), 한방의료공학(과·전공), 한방의용공학(과·전공), 함정특수장비과, 항공메카트로닉스(과·전공),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전자과, 항공전자및정보통신공학부, 항공전자시뮬레이션학과, 해양시스템(학과·부·전공·군·공학과·, 해양전자공학전공, 해양전자통신공학부, 해킹전공, 행정전산(학)과, 헬스케어기기(과,부,전공), 헬스케어정보(과,부,전공), 홈네트워크과, 화상매체공학전공, 화상매체과, 화상인쇄과, 화상정보공학부, 환경의료재료계열, 회계전산과, CAD/그래픽스전공, CAD그래픽스과, e-정보공학과, IT계열, IT공학(과·전공·부), IT교육과, IT기반전자공학부, IT기술정보전공, IT디자인계열자율전공, IT-디자인-소방계열, IT마스터학과, IT응용시스템공학(과·전공), IT전자공학(과,부), IT정보계열, IT콘텐츠전공, IT특약계열, IT학부, LCD반도체시스템(과·전공), MSDE(프로그램·전공), NT·BT·전자세라믹전공, PA전공, PCB전공, SG전기전자제어(과·전공), TV촬영조명과, VLSI&CAD(과·전공), Web비서전공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특수·중복·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신부

## 2. 편의지원 신청

- 가. 신청기간: **2021. 4. 19.(월) 09:00 ~ 4. 23.(금) 18:00**
-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다. 제출장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8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채용업무담당자
- 라. 제출서류: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장애등급과 편의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 마. 문의처: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3-258-5237)

##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참고】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 공동출제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위탁출제(인사혁신처) 과목 중 수학은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시험시간 연장 편의 지원은 장애인 구분 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이 2017년에 개정·시행(2017.3.28.)되어 2020년부터 지방직 9급(인사혁신처 수탁과목에 한함) 객관식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다. 전문의 의사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표 녹색 표시)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표 적색)
-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표 청색 표시)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기존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마.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바. 시험 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임신부	· 낮이조절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시험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임신부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





<서식3>

##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 지체장애)

- 응시직렬(직류):
- 성 명: (휴대전화: , ☎ )
- 생년월일: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1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지체 장애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TOEFL)		PBT 530점	PBT 352점
		IBT 71점	-
토익(TOEIC)		700점	350점
텡스 (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375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204점
지텔프(G-TELP)		65점(Level 2)	-
플렉스(FLEX)		625점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청각장애)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이 공고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강원도교육청 총무과(☎033-258-5237)로 연락하여 사전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이 정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기록연구 직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 1.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점수 기준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기록연구	352	350	375	204	375

### 3. 제출서류

- ①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②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의사진단서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①
    -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에 따라 검사
-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①	[Redacted]
②	60dB , 가 30%
③	[Redacted]

#### 4. 제출방법

- ① (제출대상 및 기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및 진단서 원본

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②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서류 제출한 해당 시험에 한함

## 5. 유의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